

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Q 외국인산업연수생의 이간근무제에 대한 시간의 수당 지급 여부

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등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의 경우 8개 조항을 적용하고 있음.

A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는 연수생이 사업장에서 기술·기능의 습득기회를 가지게 하는 것으로 출입국관리법령에 의하여 연수생신분의 체류자격을 가지나, 연수과정에서 현장연수의 특성상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의 대가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근로자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노동부 예규(외국인

파라서 연수생의 경우도 야간 및 연장근로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탄력적근무시간제(제50조)는 적용되지 않을 것임.

Q 일과 후 착신전화 대기시 시간의 수당 지급 여부

☞한국중합노무법인한솔사무 (031-877-7582-3)

A 일반적으로 『일·숙직근로』라 함은 일과 후에 업무를 종료하고 정기적 순환,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거나 전화착신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일·숙직시간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노동 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유사 일·숙직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의 근로에 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한국중합노무법인한솔사무 (031-877-7582-3)

전·기·상·식

한국전력공사 포천지점
고객지원과장 **노상곤**



Q 어떤 경우에 전기사용계약이 해지되는지?

수 있습니다. 단, 주택용 전력의 경우에는 전류제한기를 설치하여 전기를 제한 공급 할 수 있으며 혹서기(7월~9월) 및 혹한기(12월~2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기 제한공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A 전기사용계약 해지는 건물철거, 사업중료, 전기사용 목적을 상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장소에서 전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 전기사용계약을 만료하는 것으로서 고객이 해지 희망일을 정하여 1일전까지 한전에 신청하셔야 하며 한전에서는 해지 희망일에 전기공급을 끊기 위한 조치를 합니다. 이와 같은 '고객의 요청에 의한 해지' 이외에도 고객이 요금을 납기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전은 해지에정일 7일전까지 고객에게 해지를 예고하고 기한 내에 채납된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전에서 임의로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Q 해지된 전기를 다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고객의 요청에 의한 해지' 또는 요금체납 등 '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해지에 따라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였다가 해지사유를 해소하고 전기를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소정의 서류에 의해 전기 재사용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해지기간에 따라 소정의 금액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해지 후 1년 이내에는 해지기간중의 기본요금

(재공급수수료 7,700원 포함)과 고객부담공사비 중 적은 금액을 부담하며, 해지 후 1년 초과 3년 이내에는 해지기간중의 기본요금에 대해 고객에게 재공급 하기 위한 설계공사비를 합산한 금액과 새로이 전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산정한 고객부담공사비 중 적은 금액을 부담합니다. 해지후 3년 초과시는 일반적인 신규사용과 동일하게 전기사용신청을 하고 고객부담공사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Q 전기사용계약 휴지와 해지는 어떻게 다른지요?

A '전기사용계약의 휴지'는 농사용 등 계절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의 경우에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일정기간 동안 전기사용을 유보하는 것으로서 해지기간 중에도 전기사용계약은 존속되나 전기요금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휴지는 농사용 전력, 유수지 배수펌프장, 농축수산물의 건조 냉동 및 저온보관 고객에 국한해서만 적용되며 고객의 재공급 신청에 의해서 전기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 : 포천지점 고객지원과(031-539-9231)

의·학·상·식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내과 과장 **박선수**



심장의 이해-2

4. 심장 운동
심장의 근육은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숨을 거둘 때까지, 잠들거나 깨어있거나 멈추지 않고 수축운동을 거듭합니다. 그래서 심장은 우리의 생각이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뛰는 의미에서 심근을 '불수의근'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심장근은 또 한가지 특징을 가지는데 그것은 규칙적으로 뛰는 사실입니다. 만일 심장이 우리 뜻대로 뛰거나 말거나 한다면 아주 위험할 것입니다. 그러

나 소위 전기전도체계라고 불리는 '발전소와 전선같은 구조물'이 심근내에 매립되어 있어서 전기적인 자극을 규칙적으로 발산되기 때문에 심장은 규칙적으로 뛰고 있는 것입니다. 즉 동방 결절이라는 대형 발전소가 우심방 근육 속에 묻혀져 있어 여기서 지속적으로 규칙적인 전기적 자극이 발생합니다. 이를 우심방과 우심실사이에서 있는 방실결절이라는 제2 발전소에서 받아서 심실로 보냅니다. 이렇게 전달되는 연쇄적인 전기적인 자극은 심장 근육을 동시에 흥분시켜 반복적으로 수축과 이완 활동이 일어나도록 유도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발전소나 전선에 이상이 생기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게 되는 '부정맥'이 나타나게 됩니다. 심장의 박동수는 개인차가 있고 연령과 성에 따라라도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갓난아이부터 유아까지는 분당 100~140회 정도, 초등학생은 80~90회 정도이고 어른 남자의 심장은 안정상태에서 1분에 70~75회 정도 됩니다. 성인 남자의 경우 한 번에 내보내는 혈액량은 약 70cc정도이며 1분간의 심박출량은 약 4900~5000cc가 됩니다. 주먹만한 심장이하루동안 약7000L의 혈액을 내보내는 셈입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심박동수와 1회 박출량이 모두 증가해서 심박출량은 휴식 때의 5~6배에 이르고도 합니다. 운동할 때처럼 혈액의 산소필요량이 증가할 때에는 교감신경이 심장 수축을 촉진하고, 잠을 자거나 휴식할 때에는 부교감신경의 작용에 의해 심장이 느리게 뛰게 됩니다. ☞문의 :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가정의학과 031-539-9162)

법·률·상·담

변호사 **김제동**



【공동으로 쓰는 담의 보수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Q 제가 거주하는 집의 경계에는 이웃집과 공동으로 쓰는 담이 있습니다. 얼마 전 폭우로 그 담의 일부가 무너졌는데 담의 보수비용은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A 민법 제237조에 의하면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하나 측량비용은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하며, 다만 다른 관습이 있다면 그 관습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구거 등은 상린자 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합니다(민법 제239조).

관례도 "토지의 경계에 경계표나 담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토지의 소유자는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하는데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인접토지소유자는 그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한쪽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대하여 인접토지 소유자가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쪽 토지소유자는 민사소송으로 인접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협

력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당해 토지들의 이용상황, 그 소재지역의 일반적인 관행,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새로 설치할 경계표나 담장의 위치(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 설치할 경계표나 담장의 중심 또는 중심선이 양 토지의 경계선상에 위치하도록 해야 함), 재질, 모양, 크기 등 필요한 사항을 심리하여 인접토지소유자에 대하여 협력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8.26. 97다 6063).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특별한 관습이 없다면 무너진 담은 공유로 추정되므로 양쪽 집이 담쌓는 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하면 될 것입니다. 만일, 이웃집에서 차일피일 담의 보수를 미룬다면 상대방에 대하여 담의 공동보수를 청구하거나, 우선 자기비용을 들여서 담을 쌓고 난 후 그 비용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문의 : 변호사 김제동 법률사무소 (031-829-9311)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이문환**



Q 임신 중에 풍진에 걸리면 기형아를 낳게 된다고 들었어요. 풍진이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기형아를 낳게 되고, 아기를 갖기 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나요?

A 풍진은 풍진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으로 위생상태가 좋지 않은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나타나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대개 감기

와 유사한 증세를 나타내며 풍진을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산모가 될 연령에 있는 여성에게 풍진 감염 여부를 알기 위해 혈청 검사를 해보면 대부분의 여성이 풍진에 이미 면역되어 있다고 합니다. 풍진 바이러스는 공기 중에 매우 흔하게 돌아다니므로 풍진에 대한 면역체가 없는 산모가 임신 중에 풍진에 걸리게 되면 감기와 같은 가벼운 증세를 나타내지만 태아에게는 거의

치명적이라 할 만큼 위험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임신 3개월 이전에 감염이 되면 초기 유산이 되는 경우가 흔하고, 만약 유산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신부의 약 50~75%, 임신 4~7개월 사이에 풍진에 감염되면 이 시기에 조산이 되거나 약 25%가 기형아를 출산하게 된다고 합니다. 임신 중에 풍진에 감염된다면 기형아를 분만할 수도 있는 무서운 결과가 생기게 되므로,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아기를 갖고자 하는 여성들은 임신 전에 풍진의 항체 여부를 체크한 다음, 풍진에 대한 면역체가 없으면 풍진 예방주사를 맞아 항체가 형성된 것을 확인한 후에 임신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문의 : 포천가족·성 상담센터(031-542-3171)

세·무·상·담

세무사 **박운중**



Q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부과되는 세금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올 가을에 자녀 결혼예를로 사용하려고 미국에 출장 가는 길에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고가의 명품 손목시계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때 국내에 입국 시 관세를 내야 하는지요?

A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 시 이용할 수 있는 면세점에서 고가의 명품시계를 싸게 구입하여 국내에 들여오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주의할 점은 국내 입국통관 시 면세점이 미화400달러라

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개인 1인당 면세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관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2인 이상의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1인 면세금액 400달러를 면제합니다.

참고로 입국통관 시 적용하는 면제의 종류별로 예시를 하면 아래 3가지로 분류합니다.

-무조건 면세: 주류1병(리터 이하의 것)로 해외취득가격 400달러 이하, 담배(킬로그램 200개, 엮일련 50개, 기타 담배 250그램), 향수 2온스, 해외여행중 구입하여 사용하던 의류 등 신분증식 용품(총 구입 가격이 400달러 초과할 경우는 과세)

-조건부 면세: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 수입하는 신분용품 및 직입용품으로써 세관장이 재반출 조건부로 일시 반입을 허용하는 물품.

-1인당 면세금액: 여행자 1인당 현지 구입가격 400달러, 만약 두 개 이상의 휴대품 금액 합계가 4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인당 면세금액은 높은 세율 품목부터 적용, 신분용품이라도 외국에서 구입한 것은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무조건 면세 기준을 초과한 주류, 담배, 향수를 국내 반입 시는 400달러를 면세하지 않고 전액에 대하여 과세하게 되고,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상품물품에 대해서도 400달러 면제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외여행 시는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 세무사 박 운 중(031-872-6116)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제4기 임원 출범



- ▶고문 김인만 송중채 한희준 양주승
- ▶상임고문 최호열
- ▶명예고문 최중규 이병업 리효종 이동해 양재창
- ▶위원장 이보용
- ▶부위원장 박노현 윤중하
- ▶감사 이종희 이문환
- ▶총무 안병호
- ▶부총무 박운중
- ▶위원 조대행 김제동 윤중성 김중기 김창중 김정익 나근수 정호열 이희용 김성진 강경만 김정완 장동원 조복현 윤순옥 이종희 최윤섭 김창성 이윤우 하재인 남궁중 백한창 이관식 이미숙 정순호 김광우 정기용

포천신문 자문위원회는 포천신문이 지역정론지로 발전하는데 각 전문 분야별로 자문역할과 자문위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각 전문분야별로 포천신문 발행에 자문사업
- 포천신문의 기능과 사업에 대한 연구
- 포천신문의 취재보도 및 부대사업 지원
-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정보교환
- 기타 포천신문 발전에 관한 사항